

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

2008. 11. 14 제정

2013. 4. 8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5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3.4.8.)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된 장애학생을 말한다.
2. “교육·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 4 조 (교수·학습지원)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특별수강신청, 채플수강신청,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지원
2.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
3.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
4.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 5 조 (학생생활 지원) 장애학생의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숙사,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지원
2.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, 개인상담
3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
4. 취학편의 및 편의시설 지원
5.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

제 6 조 (심사청구) ①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학생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센터에 소장을 두되, 소장은 학생처부처장이 겸한다. 소장은 학생처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,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센터에 전문위원을 두며, 전문위원은 본교 관련 학과 교수 중에서 위촉한다.

④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담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장애

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

유형별 전담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2. 교직원·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교육·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8 조 (특별지원위원회) ①장애학생 교육·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사회복지대학원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, 대학건강센터소장, 기숙사관장, 학생처부처장, 특수교육과장 및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특별 위원 약간 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 (개정 2013.4.8.)

③위원장은 학기 당 1회의 정규회의와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·복지 지원을 위한 계획
2. 장애학생 및 보호자가 지원 요청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·결정
3. 센터의 운영과 업무 추진 방향
4. 학사지도, 대학생활지도, 진로취업지도 등 장애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(2008. 11. 14 제정)

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4. 8 개정)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